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구교강 의원 외 6인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행정안전부 제17893호, 2022.1.13. 시행)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겸직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5조, 제8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해당 하는 경우 겸직에 대한 의장의 사임 권고 의무화(안 제5조제8항)

다. 겸직신고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성주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6항 신설)

라. 겸직 사임 범위 「지방자치법」에 따라 명확화(안 제5조제7항 신설)

마. 부적절한 용어 및 문장 정비(안 제6조, 별지 제2호 서식)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1. 12. 17. ~ 12. 21.)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인용 법조문 정비와 겸직에 대한 의장의 사임 권고 의무화, 겸직신고 공개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